

1. 개정이유

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주체를 확대하고, 포장재 재질·구조 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,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중 “평판형”을 제외하는 한편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963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 조항 수정

2. 주요내용

- 가.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, 유역·지방환경청장으로 확대함(안 제8조제4항제1호)
- 나.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, 포장재의 재질·구조 기준 준수여부 조사 등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48조의제3항제1호, 제48조제3항제1의2호, 제48조제3항제1의3호 및 제1의4호)
- 다.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중 “평판형”을 제외하고,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함(안 별표6의7호나목)
- 라. 법 제36조제 2항에 따른 거짓 보고·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8의2호커목)
- 마. 법 제36조제5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변경(안 별표8의2호터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3항제1호 중 “법 제9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·구조 기준 준수여부 조사
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개성명령 및 제조·수입·판매 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

별표 6의 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발광다이오드 조명	
1) 전구형(電球形)	kg당 816원
2) 직관형(直管形)	kg당 616원

별표 8의 2호 커목 및 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커.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	법 제41조제2	100	200	300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 우,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항제16호			
터.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 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1조제3 항제3호	50	70	1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8의 2호 커목
및 터목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<u>환경부장관</u>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. 삭제 3.·4. (생략) 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<u>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채질·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</u> 1의2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·징수 1의3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채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	제8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</u>----- 3.·4. (현행과 같음) 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법 제9조의3제2항 <u>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채질·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,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실태 조사</u> 1의2. <u>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의 채질·구조 기준 준수여부 조사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 및 제조·수입·판매 중단명령 준수</u>

2. ~ 20. (생략)	<u>여부 조사</u> <u>1의3.</u>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·징수 <u>1의4.</u>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채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. ~ 20. (생략)
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86